

윤리경영방침

2024. 01. 01



제 1 장 | 총칙 |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정국토건 주식회사(이하 '회사'라고 한다)의 윤리경영을 통해 고객과 사회로부터 존경과 신뢰 받는 초일류 기업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1. 이 규정에 정하는 책임과 의무사항은 회사와 근로자에게 모두 적용된다.(파견직 근로자 포함)
2. 이 규정에서 말하는 작업장은 연구소 및 사무실, 공사현장 등을 모두 포함한다.
3. 회사의 도급 사업장에도 본규정이 적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 2 장 | 윤리현장 |

제 3 조 [윤리현장]

우리 정국토건(주) 임직원은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건전한 기업윤리와 깨끗한 조직문화를 형성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신뢰경영”, “창의적이고 합리적인 기업활동”을 통하여 고객과 사회로부터 존경과 신뢰받는 초일류기업으로 발전해 나간다.

제 3 장 | 윤리강령 |

제 4 조 [고객에 대한 책임과 임무]

우리는 고객을 위한 고객의 입장에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의 가치를 증진 시키고 고객으로부터 신뢰 받는다.

1. 항상 고객을 존중하고 고객만족을 위하여 노력하며, 고객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고객에게 최고의 품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고객을 모든 판단과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2. 항상 공손한 자세로 고객을 맞이하고, 예의 바른 태도로 정성껏 응대하여야 하며 고객의 불만에 대하여는 최대한 신속하고 친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 고객에게 허위, 과장, 과대광고를 하지 않으며, 고객에게 유익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 고객이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불공정 계약행위 등 이익을 해치는 행위는 하지 않아야 하며, 고객이 원하는 바를 항상 파악하여 이를 회사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제품의 결함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품의 안전성을 우선적으로 확보 하여야 하며, 고객의 안전과 관련하여 사용상 주의할 내용을 고객이 충분히 이해 할 수 있도록 알리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6. 고객의 재산은 회사 재산과 동등하게 보호하여야 하며, 고객 정보는 사전 동의 없이 외부에 유출하거나 본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제 4 장 | 법규준수 |

제 5 조 [법규준수]

우리는 공정하고 투명한 자세로 관련법규를 준수하며 사업활동을 한다.

1. 사회활동 및 상거래와 관련하여 기업이 지켜야 할 기업윤리 및 상도의 등을 성실히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시장경제원칙과 질서를 존중하며, 국내외 어디서나 선의의 경쟁을 하여야 한다.
3. 경쟁은 상호발전의 원동력임을 인식하고 경쟁사와 정당하고 공정한 경쟁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모든 사업은 환경 친화적으로 수행하고, 환경관련 제반법규를 준수하여 환경지킴이로서 환경보호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제 5 장 | 공정한 거래 |

제 6 조 [공정거래]

우리는 모든 협력업체에 평등한 참여기회 보장과 상호 공정한 위치에서 거래하며 상호 신뢰를 구축함으로써 공동의 발전을 도모한다.

1. 모든 거래는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보장하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어떠한 형태의 부당행위도 하지 않는다.
 - 거래는 상호간 이익이 되도록 하며 거래행위는 계약과 일치하게 한다.
 - 입찰을 함에 있어 경쟁업체의 정보를 다른 업체에 제공하지 않는다.
 - 부당한 방법을 동원하여 일방적으로 거래를 단절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 협력업체와 거래시 사전 협의 없이 부당하게 비용을 전가하지 않는다.
2. 협력업체 등록 및 선정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른다.
3. 협력업체와의 거래시 회사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개인의 이익과 관련한 어떠한 것도 고려치 않는다.
4. 거래에 필요한 정보는 공정하게 제공하며, 거래과정에서 알게 된 협력업체의 정보 및 기술을 부당하게 이용하지 않는다.
5. 모든 거래는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조건 및 절차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

제 6 장 | 국가와 사회에 기여 |

제 7 조 [국가와 사회에 기여]

우리는 국가와 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일류기업으로 성장하여 봉사함으로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한다.

1.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사회에 대한 자발적 봉사에서 시작함을 인식하고 각종 사회봉사활동, 안전환 경활동, 문화지원활동 등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
2.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과 고용창출로 복지사회 건설에 기여하여야 한다.
3. 합리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며, 국민경제에 해를 끼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4. 각 사업장에 속해 있는 지역의 주민을 위해 현장 여건에 맞는 각종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함으로써 회사와 지역사회의 일체감을 증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기업시민으로서 국가정책과 제반법규를 존중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 회사는 정치에 관여하지 않으며, 회사 내 어떠한 정치활동도 하지 않아야 한다.

제 7 장 | 임직원에 대한 책임 |

제 8 조 [임직원에 대한 책임]

우리는 임직원 개개인을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함으로써 상호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성숙한 조직문화를 이룩하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한다.

1. 임직원 개개인 인격에 대한 존엄성을 존중한다.
2. 임직원의 능력과 성과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보상을 통하여 업무성취 동기를 유발하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고 이를 활성화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3. 임직원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공정하게 부여하며, 성별, 종교, 연령, 출신지, 학벌 등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는다.
4. 임직원이 자유롭게 제안, 건의하고 애로사항을 표시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고 적극 권장 한다.

제 8 장 | 임직원의 기본 자세 |

제 9 조 [임직원의 기본자세]

우리는 정직과 성실의 신념으로 임직원 윤리의식 함양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지속적인 자기개발과 공정한 직무수행을 통하여 주어진 사명을 완수한다.

1. 기본윤리

- 임직원은 회사를 대표하고 있다는 주인의식을 갖고 항상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를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 임직원은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갖고 개인의 품위와 회사의 명예를 위해 사생활 및 직무와 관련하여 사회로부터 지탄 받을 수 있는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다.
- 임직원은 회사의 경영이념을 공유하고 각자 부여된 직무를 성실히 이행 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 임직원은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업무와 관련된 제반 사회 법규와 회사의 규정, 제도를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 임직원은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주어진 권한 내에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하여 각자의 사명을 성실히 수행하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진다.
- 임직원은 업무수행 중에 취득한 회사의 정보를 임의로 누설하지 않으며, 회사 재산을 횡령 또는 유용하지 않는다.
- 임직원은 근무시간 중에는 사업장내에서의 사행성 행위를 금지한다.
- 상사는 부하직원에게 법규 및 회사규정에 맞지 않는 업무지시를 할 수 없으며 그러한 지시를 받은 직원은 거부할 수 있고 그 내용을 회사에 알린 경우에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2. 정직하고 공정한 업무수행

- 임직원은 협력업체 및 이해관계자가 제공하는 일체의 금품, 향응, 편의 등을 제공받으면 아니 된다. (단, 친목을 위한 관례적인 중식, 석식에 한해 예외를 인정한다.)
- 이해관계자 및 협력업체로부터 금전적인 차용(부동산 포함), 담보행위는 금전수수로 본다.
- 이해관계자 및 협력업체가 행한 카드대금, 외상대금 또는 대출금 등의 대리결제나 상환 등은 대리수수로 본다.
- 이해관계자 및 협력업체에 대한 투자, 금전거래 및 피고용관계 등을 금지한다.
- 가족 친인척 또는 지인 등을 통한 수수행위는 본인의 행위로 본다.
- 임직원은 국내외 출장시 이해관계자로부터 교통, 숙박비 등 개인적 용무로 각종 편의를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3. 건전한 조직문화

- 임직원은 상호존중하며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예의를 지킨다.
- 불손한 언행 등 타 임직원에 대한 비방이나 음해행위를 하지 않는다.
- 임직원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신체적, 언어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
- 임직원간 상호 선물 제공행위는 일체 금지한다. 단, 구성원들 간의 부담 없는 공평한 비용으로 제공하는 생일선물 등은 예외로 간주한다.
- 임직원간 부조는 사회통념 및 관행의 금액범위 내에서 자의적으로 한다.
- 학연, 지연, 혈연 등에 의한 파벌 조성이나 차별대우를 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 9 장 | 임직원 윤리강령 |

제 10 조 [임직원 윤리강령]

정국토건(주) 임직원은 일류기업 성장을 위해 진력하여야 한다. 이에 정국토건(주) 임직원 모두는 윤리강령을 준수함으로써 올바른 자세를 갖추 것을 다짐한다.

1. 우리는 회사의 규정을 준수하며 투철한 책임의식과 소명의식을 갖고 직무에 충실한다.
2. 우리는 '원도급사의 발전이 회사의 발전'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성실하고 공정한 자세로 업무수행에 진력한다.
3. 우리는 끊임없는 자기계발과 전문지식 습득을 통해 업무능력을 배양하는데 총력을 경주한다.
4. 우리는 향응접대와 금품수수 등 일체의 부정행위를 지양하며, 회사의 재산을 성실히 보호한다.
5. 우리는 자랑스런 정국토건(주)의 임직원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모범적인 생활자세를 견지한다.

| 부 칙 |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01월 01일 부터 시행한다.